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 토 보 고

〈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일부 조항 내용 이관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96호)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97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4
2. 정의 조항 신설	11
3.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 마련 ...	15
4.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근거 마련	18
5.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21
6.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25
7. 긴급중지명령, 자료의 제출 및 보관	33
8.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39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해배상, 업무위탁 근거 마련	50
10. 벌칙 및 과태료	54

I. 제안경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3.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3.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

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서비스, 빅데이터, 모바일화 등 이른바 ICBM의 보편화로 초연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위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 동 개정안 및 폐지법률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의 일부 조항을 이관하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은 다음 <표>와 같이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제2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제6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의무(제7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제8조)” 등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고, 폐지법률안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관한 본문 내용과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¹⁾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조문	단말기 유통법 이관 조문
1	제2조(정의) ※ 제18호~제29호	단말기 유통법 제2조
2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단말기 유통법 제6조
3	제32조의1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단말기 유통법 제7조
4	제32조의13(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단말기 유통법 제8조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32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단말기 유통법 제9조 ③항~⑤항
6	제32조의15(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단말기 유통법 제9조의2
7	제32조의16(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단말기 유통법 제10조
8	제32조의17(긴급중지명령)	단말기 유통법 제11조
9	제32조의18(자료 제출 및 보관)	단말기 유통법 제12조

○ 단말기유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차별 지원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해 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임.

-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공시 및 공시내용 준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등’이 있음.
- 본래 법률 시행 당시에는 지원금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항은 2017년 9월 30일 일몰²⁾됨. 다만, 여전히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함.

2)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 [법률 제12679호(2014. 5. 28.)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단말기유통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이통사는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요금제, 지역·나이·신체조건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제3조). ‘부당한 차별지급’은 동일한 공시 기간 중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지원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시행령 제3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제4조제5항)
지원금 공시 및 공시내용 준수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공시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제4조제3항 및 제4항).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사용 의무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제5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제공	이통사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보통 선택약정이라고 부르는 할인이 이에 해당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 할인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 ³⁾ 하는데 현재는 12·24개월 약정 기준으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 ‘박소영 ,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196호, 2024.2.20.’의 내용을 재정리함.

○ 그런데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달리 동 법 시행과정에서 통신사업자 간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의

3)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일환으로서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밝힘.⁴⁾

- 동 개정안도 이러한 계획의 후속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조항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참고로 정부는 법 개정 앞서 2024년 3월 관련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먼저 제·개정하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특정 가입 유형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3월 8일)하고, 관련 고시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2024년 3월 14일)하여,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5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⁵⁾
-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발생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되어 국민들에게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지원금 공시 준수 의무 폐지를 통해 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맞추어 기민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⁶⁾ 지원금 차별 허용 및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2024.1.22.

5) 국회 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2024.5.

6) 위의 글.(박소영)

- 다만, 현 단말기 제조사 과점 시장 상황상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하더라도 큰 폭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⁷⁾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고, 사업자 간 과다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⁸⁾도 있으므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지원금 규제 내용 외에도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이관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문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아가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동 개정안을 포함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이관하는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⁹⁾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7)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은 5~7% 수준으로 추가 지원금 지급여력이 크지 않아 보이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등이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과점체제가 되어 지원금 지급 유인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8) 내일신문, 「단통법 폐지와 이용자 보호」, 2024.2.26.

9)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2104811, '20.11.2.) ※ 김영식의원안의 경우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안(2104819, '20.11.2.)과 함께 발의 2104819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2126563, '24.2.28.)

<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제21대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역>

	의원명 (의원번호/ 발의일자)	개정안 주요 내용
1	김영식 의원안 (☎2104811, ☎2104819 / '20.11.2)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함께 발의 ❶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조문없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2개)**'으로 구성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조치)', '경과조치(위반행위 시 종전 규정 적용)' ❷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사업법'에 6개* 조항 이관 ※ '단말기 유통법'의 총 22개 조문 중 주요 조문 6개를 '사업법' 이관 및 해당 조문과 연계된 사실조사·과징금·과태료·벌칙 조항 등을 개정 < 이관되는 주요 조항 > 2조(정의), 4조(지원금의 공시), 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2	윤두현 의원안 (2126517 / '24.2.15)	○ 「단말기 유통법」 폐지(부칙), 3개 조문과 해당 조문 연계된 벌칙·과태료 조항 등을 개정 < 이관되는 주요 조항 > 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제7조의제2항(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3	박성중 의원안 (2126563 / '24.2.28)	○ 「단말기 유통법」 폐지(부칙), 선택약정,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7개 조문과 해당 조문과 연계된 사실조사·시정명령·과징금·벌칙·과태료 조항 등을 개정 < 이관되는 주요 조항 > 2조(정의), 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8조(판매점 선입에 대한 승낙), 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의2(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 조성), 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2024.3.)를 재정리함.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제약을 없애고, 단말기 유통법 내 이용자 보호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 수용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단말기 지급 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말기 유통법」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바 수용한다는 입장임.
- 사업자 간 경쟁 촉진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문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정의 조항 신설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등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제18호 ~ 제29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19.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0.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2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4.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
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
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
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
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5.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
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
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
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6.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
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
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
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
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신 설>

<신 설>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29.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법에 규정된 정의 조항 총 12개 호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 이관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18호) 이동통신서비스, (19호) 이동통신사업자, (2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21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23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 (24호) 대리점, (25호) 판매점, (26호) 출고가, (27호) 지원금, (28호) 장려금, (29호) 대규모유통업자

- 이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중 유지할 조문을 이관하면서,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2조제3호의 “이용자”¹⁰⁾ 정의 조항은 이관하지 않고 있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정의 조항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이용자¹¹⁾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 략)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생 략)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근거 마련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안 제32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u> <u>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u>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등 혜택(이하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한 조문을 이관하려는 것임.
-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되, 이용자의 요금할인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 문언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과는 다르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확대 경쟁 활성화라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존 이용자들의 혜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원금 공시의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수준의 혜택 제공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¹²⁾ 이에 따라 현재 25%의 요금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음.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그런데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지원금 공시의무 및 차별 지원 제한이 사라짐을 전제로, 개정안은 문언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원금을 “대신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채 할인을 산정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즉 선택약정 할인 요율에 대한 명문상 규정이 사라지는 상황으로, 각 통신사별 약관에 따라 현 기준인 25% 이상에 해당하는 할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을 것임.
- 개정안 취지는 사업자 간 단말기 지원금 확대 경쟁을 활성화 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이용자의 요금할인 선택권을 지속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경우 통신사가 시장 상황과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기존 이용자 혜택이 감소되지 않게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 신고 의무 등을 활용하여 통신사의 할인을 적절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근거 마련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도록 하고,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오인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 판매하는 경우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계약을 체결 시 지원금과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12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12(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u>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앞선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7조¹³⁾에 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32조의12제3항의 경우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7조제3항과는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후단을 추가함. 이는 지원금 공시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통사별
지원금 규모 등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5.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선임 금지,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32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13(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u>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u> <u>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u> <u>하여야 한다.</u>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8조¹⁴⁾에 규정된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려는 것임.
-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는 통신시장 유통질서의 건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이동통신사업자가 KAIT¹⁵⁾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하고 승낙을 부여함.

1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판매점 사전승낙 심사항목>

심사항목	
신청정보 일치 여부	1. 판매점 주소지
	2. 대표자 및 간판명
	3. 연락처(매장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4. 영업형태
	5. 종사자 수
매장정보	1.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 상담 인프라, PC, 인터넷, 프린트, 전화기 및 파쇄기 등
	2.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3.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 2층 이상 오피스텔, 아파트 등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판매점 사전승낙 불가
	4.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5.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자료: www.ictmarket.or.kr

- 이는 판매점 간 가입자 개인정보 거래,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사기판매, 보조금 제공 약속 후 잠적하는 일명 ‘보조금 먹튀’ 등 판매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문으로서 이를 이관하여 유지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법에서 선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전승낙제에 대한 규정이 시장활성화와 시장 건전화에 기여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는 바, 해당 조항에 대한 이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¹⁶⁾임.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24.3.22.

6.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32조의14 신설) 하고,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 중고 단말 활성화 조성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32조의15 신설),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의무, 업무 위탁 등의 규정(제32조의16)을 둠.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2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u>

<신 설>

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15(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신 설>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6(분실·도난 단말장치
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

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
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
·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
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
난 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
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
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
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¹⁷⁾에 규정

17)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①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분실·도난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려는 것임.

○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면서도 공정한 단말장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동 조문들을 이관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안 제32조의14의 경우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9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이관함.

-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조항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또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려는 점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제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¹⁸⁾도 있음.

○ 단말기 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서 규정하는 문언을 반영하여, 안 제32조의14제1항의 “이동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약칭 사용 시 타 조항과의 적합성 제고, 명확화 등의 측면에서 안 제32조의16제1항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

18) 국회입법조사처,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24.2.20),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24.5.30)

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
“를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국제 식별
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안 제32조의14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위험과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후생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¹⁹⁾

-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은 현행 단통법 제3조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에
관한 조항을 이관하지 않고 삭제하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여전히
사업자의 부당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원금 지급과
별개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지
원금 지급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이익 저
해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환경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제32조의14제1항의 보호법익은 이용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업자의
요구·유도 행위를 직접 금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바
적합한 수단이라는 의견임.

19)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3조의 삭제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 모호
해진 상황에서 이통사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금 요구, 유도행위만으로 시정명령, 과징
금, 벌금 등의 부과가 가능하며, 이통사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는 단통법 폐지 전과 완전히 동일
수준*으로 규정됨. 이는 규제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위험과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및 이용자 후생증진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과 별도로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할 가능성이 있는 이통사와 대리점간 협정에 따른 요구·유도행위 중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하게 규범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하다고도 볼 수 없으며,
- 자유로운 경쟁 활동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위법소지가 높고,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가 대리점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당해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7. 긴급중지명령,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에 대해 긴급중지명령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2조의17), 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판매량, 지원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18).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2조의17(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

<신 설>

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
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
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
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
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
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
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8(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
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

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
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
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
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
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
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
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
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
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

	<u>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u> <u>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11조, 제12조²⁰⁾에 규정된 긴급

20)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긴급중지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14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중지명령, 자료 제출 및 보관에 관한 조문을 이관하려는 것임.

○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12조제2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실효(각주 참조)된 조항인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까지 전부 포함하여 이관하고 있음.

- 이는 제조사로부터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및 장려금 규모 관련 자료 제출 근거를 다시 명확히 마련하여, 가계 통신비 관련 정책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도 해당 조항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사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및 장려금 현황 제출을 협조받고 있음.

○ 한편, 법제처는 방통위 긴급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²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④ 제2항에서 규정

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2679호(2014. 5. 28.)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2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와 같은 신설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안 제51조) 및 시정명령의 근거(안 제51조의3), 과징금 부과(안 제52조제3항) 근거를 둬.

현행	개정안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u>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u> 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 <u>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u>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u>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u>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u>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무소</u> ----- ----- <u>또는 조사대상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조사대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2조의12부터 제32조의14까지 및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

다)의 사업장에-----
-----.

③ -----

-----조사대상사업
자에게-----.

④ -----조사대상사업자의
-----조사대
상사업자의-----

-----.

⑤ -----
-----조사대상사업자
-----조사대상사업자-----

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 11제1항 또는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 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
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
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
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
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
매점은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
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
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
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1
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
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행
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
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

<신 설>

에 따른 조치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3(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

이 제32조의12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⑤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⑥ <u>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13조부터 제15조²²⁾까지 규정된 이동통신사

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3항·제4항 또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 제14조(시정명령)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3항·제4항 또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3항·제4항 또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과징금)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제4항,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제3항, 제8조 제4항 또는 제9조 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 제1항, 제4조 제5항·제6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7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이관하려는 것임.

- 선택약정 할인(안 제32조의11), 이동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안 제32조의12), 사전승낙제(안 제32조의13), 공정한 유통 환경조성(안 제32조의14) 등의 조문을 이관하면서, 현행 단말기 유통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조사 및 행정상 제재 근거를 두려는 것임.

○ 법제처는 안 제51조제2항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호별로 구분이 필요하며, ‘조사대상사업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조사대상사업자’를 ‘해당 조사대상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안 제51조의3제5항 단서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3조제3항을 고려하여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재결 또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4.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5.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방통위 수정의견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생략) ② ----- ----- ----- <u>전기통신사업자</u> (<u>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u>), 대리점, 판매점(이하 이 조에서 “ <u>조사대상사업자</u> ”라 한다)의 사무소-----또는 <u>조사대상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조사대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32조의12부터 제32조의14까지 및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u> ----- -----.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생략) ②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1. <u>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u> 2. <u>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대리점·판매점</u> 3. <u>제2호의 대리점·판매점을 제외하고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③ ----- ----- ----- <u>조사대상사업자에게</u> -----.	③ ----- ----- ----- <u>조사대상자에게</u> -----.

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해배상, 업무위탁 근거 마련

선택약정 할인, 이동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사전승낙제, 공정한 유통 환경조성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제51조)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54조제2항 신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5조제2항 신설),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둠(안 제93조제4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략) <u><신 설></u>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u>

제55조(손해배상) (생략) <u><신설></u> (생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제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의13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제32조의12제2항·제3항, 제32조의13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5조(손해배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생략)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① ~ ③ (생략) <u><신설></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5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항²³⁾에 각각 규정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손해배상,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인증제 업무처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이관하려는 것임.
- 안 제54조제2항 각 호의 대상 규정이 중복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	수정의견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18조(손해배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number 2. The page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lines, each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The number '2' is written in a circle at the top left of the first set of lines.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2항 · 제3항,
제32조의13제1항 · 제3항 · 제4항 또는 제32조의14제1항 · 제3항을 위반한 행위

10. 벌칙 및 과태료

신설되는 조문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포섭함(안 제95조, 안 제96조의2, 안 제99조, 안 제104조 등).

현행	개정안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 8. (생략) <u><신설></u>	제95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2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u> <u>4의3.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u> <u>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u> 5. ~ 8. (현행과 같음) <u>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8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u>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2.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4의7. (생략)

<신설>

제외한다)를 한 자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⑤ -----

-----부과하되, 제4호의8부터 제4호의18까지,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 4의7. (현행과 같음)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9. 제32조의12제2항을 위반하
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
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
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0. 제32조의12제3항을 위반
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
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
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
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
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
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3제1항을 위반하
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4의1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

<u><신 설></u>	<u>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u> <u>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u>
<u><신 설></u>	<u>4의14. 제32조의13제5항에 따라</u> <u>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u> <u>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u> <u>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u> <u>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u> <u>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u>
<u><신 설></u>	<u>4의15. 제32조의13제6항에 따른</u> <u>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u> <u>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u>
<u><신 설></u>	<u>4의16. 제32조의16제2항을 위반</u> <u>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u> <u>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u> <u>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4의17.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u> <u>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u> <u>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u>
<u><신 설></u>	<u>4의18. 제32조의18제1항 또는 제2</u> <u>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u> <u>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u> <u>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u> <u>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u>

1) (안 제95조 벌칙, 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4호의2	제32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제4호의3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제4호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2) (안 제96조2 벌칙, 신설) 안 제32조의18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통사 및 제조사가 제출한 판매량, 지원금 등 자료 관련 영업 비밀 준수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3) (안 제99조 벌칙, 개정) 3억원 이하 벌금

	개정안
제1호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제2호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제3호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4) (제104조 과태료, 개정) 제4항(1천5백만원 이하) 및 제5항(1천만원 이하) 개정

	개정안	부과징수 부처
제4항제3호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9	제3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0	제32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1	제32조의13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2	제32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4	제32조의13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5	제32조의13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방통위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16	제32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17	제32조의17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방통위
제5항제4호의18	제32조의18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방통위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기정통부
제5항제4호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방통위

- 한편, 안 제9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범위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설되는 안 제104조제4항제3호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보다 인용조문의 순서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통상 “부과하되” 이후에는 해당 과태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 제104조제5항 자구를 일부 수정함.

개정안	수정의견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 ----- -----.
1.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자	1.----- ----- ----- ----- -----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 ----- ----- ----- -----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3. (생략)	3. (생략)
제10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④ ----- ----- -----.
1.·2. (현행과 같음)	1.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리

3. 제3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대 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 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⑤ ----- ----- -----<u>부과하되</u>, 제4호의8부터 제4호 의18까지,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 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이하 생략)	<u>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u> 2. (현행 제104조제4항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104조제4항제2호와 같음) ⑤ ----- ----- -----<u>부과하고</u>, ----- ----- ----- ----- -----. -----. (이하 생략)
---	---

문 의 처
02)6788-5225